

2015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5. 12. 17. 14:00~
- 장소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 참석 : 윤영우이사(송석두이사장 대행), 주도연(이연주이사 대행), 김현옥(김진태
이사 대행), 장기수(이사), 박철웅(이사), 박세화(항구남이사 대행), 이종원(이사),
장순경(이장희이사 대행), 김혜원(이사), 송태화(이사), 김상국(강정길이사 대행),
허영(감사)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이재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입니다. 연말이라 본업으로 바쁘신 데도 청소년진흥원에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직원들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회 개최관련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015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위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정관 제17조에 의해 재직이사 12 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시 이사회에 앞서 먼저, 이사장님이 주요한 다른 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 이사장을 대신하여 정관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조문을 근거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이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기존 임원분들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이연주 체육인성 건강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도연장학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장으로 재직 중이신 김진태 이사님의 위임을 받아 김현옥 경사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장희 이사님을 대신하여 충청남도 교육청 천안지역고교평준화 상설협의체 위원이신 장순경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강정길 법무사 위임을 받아 김상국 법무사님이 대

리 참석하셨습니다. 천안시 푸른 노무법인 대표로 재직 중이신 황귀남 이사님의 위임을 받아 박세화 노무사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본업에 바쁘실텐데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원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본 원 박영의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이사님들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개회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015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각 기관 각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고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안건이 7건, 그리고 심의의결안건이 11건입니다. 먼저 보고안건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심의의결안건 11건 일괄 상정해서 안건별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안건으로서 제1호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서면결의]내용, 2호 2015년 제3차 임시이사회[서면결의]내용, 3호 당연직 이사 변경등기, 4호 원장 연봉확정, 5호 2015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정기종합감사결과, 6호 2015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등기업무감사 결과, 7호 사무실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계획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고안건 4건에는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그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원 원장 장기수입니다. 바쁜 일정에서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보고서와 회의서류를 보시면서 제 보고내용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제1호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 37,380천원과 타기관 지원사업 증액분 10,451천원 합계 금 47,831 증가분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건으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안건이 1건이라 서면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보고의 건 제2호 2015년 제3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 관련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본원 당연직 이사 직제가 변경되어 신속히 정관을 개정한 후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했기에 부득이 서면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충청남도 교육청의 직제가 수시로 바뀐 점을 감안하여 당연직 이사 직제명을 기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장'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의 건 제3호 당연직 이사 변경등기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 경찰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변경등기로, 충청남도 교육청 고육심 학생생활지원과장님 후임으로 이연주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충청남도 경찰청 유제열 여성청소년과장님 후임으로 김진태 과장님이 새로이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보고의 건 제4호 원장 연봉 확정 관련입니다. 충남도청 혁신관리실에서 원장 기본 연봉을 70,000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봉급 및 인건비성 수당인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고, 성과연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도 혁신관리실에서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보고의 건 제5호 2015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정기종합감사 결과 관련입니다.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2건과 권고 2건 및 훈계 1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건 제6호 2015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등기업무감사 결과 관련입니다. 범인 변경등기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건과 관련된 것으로 처분결과는 행정상 주의였습니다.

보고의 건 제7호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2016년 1월 19일 도래됨에 따라 2년 연장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으로 연구.검토하

여 2년 후에는 직접사업을 축소 또는 지양하여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한 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2016년 내에 전향적으로 이전장소 등을 물색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가지 보고안건에 대해서 일괄 저기 음 장기수원장님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이사님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조언을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보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다음은 심의 · 의결안건으로 제1호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안)과 제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호 2016년도 본 예산(안) 제4호 정관 일부개정(안) 제5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제6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제7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제8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제9호 사업계약직 정규직 전환계획(안) 제10호 기본재산(출연금) 이자 사용 계획(안) 제11호 2016년 급여인상 지급(안)에 대한 일괄을 상정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심의안건은 책상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종합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안)입니다. 2016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하여 직접사업을 대폭축소하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사업지원 및 협력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큰 방향은 도 기관으로서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저희가 주관하거나 시·군 간부들이라던지 시·군 신입직원들을 연수를 통하여 모든 사업에 포커스를 시·군과 함께하고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에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큰 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정책개발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사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포럼이라던지 실태조사 그리고 대한민국청소년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개발 여성가족정책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개발그리고 도에 정책과제를 통한 정책개발 등 저희 내부에서 최대한 현재있는 인력을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구요, 2016년에도 그런것들에 대한 끈임없는 역량강화와 협업을 통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정책연구원이 배정되지 않다하더라도 현재있는 좀 더 팀장 중심으로 그런 팀을 좀 별도로 구성하는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제라 이런 부분들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이나 이런 것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예를 들자면 시·군 지원팀이라던지 정책개발팀에 117제를 재편하는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업에 대한 개별 개별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첨부해드린 사업계획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의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기본급 및 수당잔여분을 연금부담으로 전환 하였으며 타기관지원사업과 수익자사업을 관련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2,922,034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7,97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예산안 제안 설명서와 별책2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3호 2016년도 본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131,755천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2,730,322천 원에 대하여 금액으로는 401,433천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전년도 보다 210,000천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249,971천 원이 증가하였다는 뜻입니다. 증가된 도출연금은 단기간 및 시간제 사업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 처우개선 및 사업계약직 정규직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부는 부족 운영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5개 시·군에 대한 사업지원 및 신규사업을 위해 3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눠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책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4호 정관 일부개정(안)입니다.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실행계획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재산 편입 목적사업비 운영 부득이한 경우 본예산에 추계하여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제5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개정으로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한도액 월간 횟수 및 시간제한 직무유착성 외부강의 금지, 위반 행위시 징계 및 전직원 대상 교육강화 관련된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본인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외부강의를 자제하고, 청소년진흥원 고유 업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제6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부의안건 제9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 본원에서는 사업계약직에 고용을 안정화하고 처후를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제공하고자 2016년 도에 사업계약직 26명 중 10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규직전환은 인원 27명에서 37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나눠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7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2015년 9월 28일 시행하게 된 아동복지법상 결론이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있으며, 신규채용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4차 임시이사회 보고드린 수습시간이 기존 1년을 6개월 단축한 것을 근본규정상 명시적으로 개

정하였습니다. 원장상장에 대한 이사장상 상신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계약직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고려하여 기존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안에 채용요지를 근본에 인사규정에 규정하게 신설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8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근본개정 사유는 정부정책 및 감독기관 지침 준수와 직원 처우개선 목적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권고사항인 퇴직금 및 가족수당 규정 일부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혁신관리담당관실에 성과급 지급 기준 사항 조정 지침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존 연봉에 0.9%에서 기본 연봉 월액에 100% 변경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규정은 규정대로 개정을 하고 예산이 여유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반영은 3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년도 기본연봉 성과급 산입을 변경하였으며 기타성과급관련 평가 시 기관평가를 포함하여 성과급지급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5시간 증액하였으며, 팀장수당을 월 10만원씩 연봉계약 시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특정업무수당 월 8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도 감사위원회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9호 사업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획(안)입니다.

정규직과 동일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업무 향후 지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신분차별로 인하여 급여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하고 조직을 안정화 하여 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계약직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은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계약직원에 대하여 정규직전환 검토를 해야하는지 보류이나 예산 상 우선적으로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직원4명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명, 청소년성문화센터 5명에 대한 전환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중 117학교폭력2명은 충청남도경찰청에서 파견되어 4조 2교대로 복무중이며 일시보호소 2명은 전일제 야간근무형태로 인하여 전일제, 사업계약직에 대한 전환계획 우선순위에 벗어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와 협력하여 이들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직전환 대상이 아니더라도 복지에 관련된 법인이 포용하는 내에서 동등하게 지급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급해서 직원간에 위화감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

환은 신입직원 채용에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정된자에 한하여 전환시킬 예정이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매6개월마다 별도 심사 후 전환하되, 3회이상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사업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거나 별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전환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계획으로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 관련된 여가부에 자격기준을 준하는 대상자만 정규직 전환하는걸로 계획이구요, 저희가 애초에 기간제를 뽑을 때 도 자격기준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직원에서는 대상이 다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환시기는 이사장님과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자에 대한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하되 기존직원들이 2014년까지 6년여 동안 급여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기본연봉은 경력을 감안하지 않고 보수규정상 연봉최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10명 대상 중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저희가 올해 도에 여러 가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고정형 성문화센터가 신설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센터와 신설되는 고정형성문화센터, 이동형성문화센터 관련된 종합적인 방침과 지침 그리고 도에 입장이 확정 되는대로 협의해서 그 시기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다섯분은 전반기에 전환을 예상하구 있구요, 다섯분은 그 결정이 끝나는 후 반기에 전환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이번이사회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 10호 기본재산(출연금) 이자 사용계획(안)입니다.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이자가 연 2.1%에 불과하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제로 금리 수준으로 기본재산 적립의 의의가 반감되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금액은 세 공제 후 약 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제11호 2016년도 급여 인상 지급(안)입니다.

원장 및 실·센터장은 2015년 말 현재 기본연봉으로 동결하고 팀장 이하 직원에 대하여 2015년말 현재 기본연봉에 대하여 3%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는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인 점을 감안하여 인상하여 측정하게 된 것 입니다.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과급지급기준 형상과 특정업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 증액은 예산사정으로 2016년 본예산에는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규정을 먼저 개정하고 시행은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이라던지 도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상황에 맞춰서 집행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구요, 예산과 편성과정에서 아무 무한하게 도와주신 윤영우정책관님 이하 유규상팀장님 충청남도의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모두는 우리 이사님 포함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그 이상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사님들이나 지역사회에에서 요구하는 충남청소년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한다는 다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들으셔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거 같아서 안건처리는 제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건을 일괄 부임을 했지만은 처리는 1건씩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며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참석하니까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안들어야 할 거 같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안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첫째 안건이 이 책인거 같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안) 제일먼저 2016년 주요업무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세부 계획안에 대해서 진흥원이 이렇게 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쭉 훑어 보시고 의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한 1~2분 내에 검토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예. 의원님 우리 이종원 의원님이신가요?

이사 이종원

네, 이종원입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네,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사 이종원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구요, 각 조직별 사업부분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지원실에 속하면 아닐텐데, 이게 뭐 굳이 행정지원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이사 장기수(원장)

저희도 조금 조직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문제의식을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기 직전에 진흥원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일에 과정에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어서 관리를 행정지원실로 편성을 시켰는데 말씀하셨듯이 올해 제가 보고에 말씀 드렸던것처럼 성문화센터가 도에 고정형이 더 생기고 실제로 이동형도 운영관련해서 고민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에 센터로 독립을 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상담복지센터 산하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었거든요? 다시 복귀 하던지 몇 가지 검토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성문화센터가 전반적인 정책이 확정된 시기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내부에 논의과정에서 조금 기형적으로 약간 조직이 변했던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원장님 말을 덧 붙여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아웃트라인은 우리 성관련 도내 센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뭐 미혼모 센터라던지, 성폭력센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제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충청남도 성관련 센터라던지 그 다음에 구제하는 각 센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내가 가지고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거에 대해서 나오면 서브조직을 진흥원에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을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바랍니다. 뭐 2016년도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사 김혜원

질문이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 총괄이 앞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어서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로 되어있는 4개정도가 가장 바뀌는 내용인거 같아요.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몇 페이지에요 몇페이지?

이사 김혜원

나눠주신 자료에 주요업무 세부계획안 그거에서 사업계획서 총괄 맨 앞 페이지 4개가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군지원을 많이 강화하고 직업사업을 축소한다는 개념에서 15개 시·군 청소년활동 거점센터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있어서요 다른 것 들이야 간략간략한 사업인거 같은데 이것은 센터가 운영되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계획이신가요?

이사 장기수(원장)

저희가 특별히 센터를 만들겠다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청소년정책에 전달체계가 상담복지센터는 15개시·군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 한 축인 활동에 영역들은 수련관, 수련원, 방과후아카데미 개별적으로 사업, 사업별로 원별로 있기 때문에 정책에 전달과정 협의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특별히 센터는 만들지 않고 일정정도 거점센터 형식으로 2·3개 지역을 묶어서 한 기관에 한해서 그 지역에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지원 하는 형태로 해서 그 명시를 거점센터로 한 것 이구요, 저희가 지금 고민은 시·군별로 그러면 활동에 정책 전달체계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기관한테 그 회의를 좀 운영하고 회의비정도를 지급할건지 아니면 2·3개 시·군을 묶어서 거점센터 형태로 일정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첫 사업으로 예상은 저희가 3200만원 활동에 어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시·군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도 기관으로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2016년에 하려고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잡아 놓은 형태입니다. 별도의 센터가 아니라 현재 있는 기관중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약간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라던지 몇몇 다른 곳에서 거점센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려는 신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 송태화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것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8페이지 같은 경우에 주요업부 세부계획 1 청소년지도자 합동 워크샵 개최해서 박스안에 필요성과 요약이 됨에 불과하고 추진근거와 필요성은 없고 사업계획이라던지 사실은 추진근거라고 하면 법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박스안에 필요성이 다 들어 갈테고 불필요한일을 좀 줄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말들을 너무 이상하게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금액개요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거기에 따라 어떻게 액션을 할 것인지 해주시고, 또 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이 체제를 쭉 보면 필요성, 사업계획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각 사업별로에 사업에 단위별로 추진계획을 뮤어줘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사업계획을 읽었어 쭉 나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뒤에가서 8건에 추진계획을 다시 작성하는데, 불필요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사업에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 까지 같이 넣는 것이 일을 좀 줄일 수 있는거고 전체적인 틀을 추진근거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타만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송태화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 할 건가를 알려 주는거 입니다. 뭐 또 의원님들 더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세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예.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제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부록 이것입니다. 이거 보시구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에 대부분 제가 보기엔 수당성격하고 그런 것 들을 보존해주고 하는데 사업예산에 포함된 목이 있어요? 행정실장님?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사업예산에 포함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인건비 조정하는 부분이 있구요, 타기관지원사업비 30만원, 그리고 수익자지원금 600만원 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결정해야됩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아 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를 사업비라고 말씀 하시는거에요?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아 그것은 행정실내에서 급여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수익이 칠백 몇 만원 그런걸로 되어있는데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예, 타기관지원사업비 34만7천원하고 수익자 지원금 663만원입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예예, 혹시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위원님들 의의가 없음으로 이렇게 알고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윤영우

의사일정 제3안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것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이제 도에서 돈을 조금 올려가지고 췄는데, 예산서가 이번에 별책3호 3호를 쭉 보시고 인건비 분야야 뭐 정부방침대로 해서 올린거고 사업비도 인제 사업비에 대해서도 보시고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사 송태화

국비보조금에서 1억1천 정도가 줄은건 뭐에요?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사 윤영우

전체적으로 줄은 건 아니잖아요?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장학사님 궁금하신거 없으세요?

이사 주도연

뭐 궁금하기 보다는요,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원장님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업무계획 단계에서 업무 협력과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깜짝 놀란게, 굉장히 원장님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와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요.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더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예.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저도 좀 특성화된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쇼.

이사 주도연

예. 건의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위원님들 더 뭐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이사 송태화

예, 아주 그 원장님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정책관님하고 매년 봉급을 도출연금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이사로서 고맙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도의원님들 많이 설득해서 더 좀 많이 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예.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호 정관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정관주요내용이 아까 저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 장기수(원장)

잉여금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목적사업에 쓰라는 도에 지침입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잉여예산이죠? 잉여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게 잉여예산가지고 도의회 행정감사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잉여예산만큼 예산을 두지 말아라. 이 얘기 인데. 우리는 그거를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쓰는거거든요.

이사 장기수(원장)

실제로 저희는 잉여금이 많아야 1500~2000만원인데 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10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회에서 입장에서 보기에는 잉여금을 많이 하는 곳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기관에 특성이다 보니까 연간

에 나오는 사업들이 1,2월에 하는 특성도 있는데 아주 그런 복잡한 구조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임여금에 문제가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구요, 예산에 부족해서 문제지, 임여금이 많이 남아서 문제는 아니구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정도에 임여금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자수입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목적사업에 맞춰서 쓴다는 것 이구요 아까도 본예산 도와주셨지만은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시·군 지원사업으로 예산 일정부분을 진흥원뿐만 아니라 시·군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예상으로 하자해서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우리가 예비비 얼마 가지고 있죠?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300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거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건 너무 적은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경상비에 비해서 일괄적으로 10%는 가지고 있어야되요, 내년도 경제가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에 대해서 10%씩은 깎아내서 가지고 있어야되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방침이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예비비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를 좀 아껴 가지고 이렇게해서 예비비를 확보할 것인가를 일단 예비비로 임여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사 송태화

예산편성하고 임여금 예를 들어서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있다는데 30몇억중에서 물론 예비비가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최저한에 인건비만 편성합니다. 사업비에 같이 충당하고, 그리고 저희들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그정도로 저희가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것은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내년도 청소년팀장님께서 예비비가 조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보기엔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예비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갑자기 청소년에 관한 인사사고가 난다던지, 갑자기 어떠한 사고가 있다던가, 돈을 써야하는데 다시 도에서 편성해서 쓰기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청소년팀장님이 내년도에 도에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생각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예.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러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내용이 강의 나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건가요? 업무시간에 대학강의라던지 우리가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구요. 혹시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사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송태화

예를 들어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 사항인데 지금 도에서 그나마 별도에 이런 회의 강의 못나가게 하는거 같은데 산하기관은 괜찮습니까? 감사님?

감사 유규상

도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중에서 출자출연기관 똑같이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 송태화

그러니까 금년 7월1일부터인가 도는 일체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사님도 못하고 다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감사님 입장에서 이게 괜찮은지

감사 유규상

진흥원도 해당됩니다.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지침에 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자체가 유관기관에 출장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러니까 사전승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출장을 가라는 것이지요. 뭐 행동강령이 클리어해지고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준공무원으로 가다보니까요. 자 위원님들 이부분에 대해서 의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의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호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직제 주요 개정명은 무엇입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총 직원이 53명이신데요, 지금 정규직이 27명이고, 비정규직이 통틀어서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된 꿈드림센터하고, 성문화센터, 그리고 활동에 기준에 정원을 못 채웠던 분들을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26명 중에서 사업형태에 대해서 사업비에 포함된 형태에 분들은 정규직전환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조작이 신설되고, 자연되는 성문화센터와 꿈드림센터를 전환하는 과정이구요 그 과정에서 2015년부터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수당이라던지 법적수당을 동일하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정규직전환하는 비용은 10명 전환하는데 추가적으로 4천정도 그렇게 기자급을 했기 때문에 전환하는 추가비용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비정규직문제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도 이제 시·군 관련해서 얘기했지만은 저희는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

에 사람사업을 하고, 사람이 재산인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나 예산심의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지 않나 논란이 있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상화과정이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워낙 정체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다보니까 조금 과한 느낌이 있지만은 이때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고하면서 상반기에 꿈드림센터는 전환을 하고 성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도에 방침이 정해지는 운영형태가 확정되는 시기에 단계적 전환을 한다는 절차를 밟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혹시 우리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우리 원장님은 제가 자랑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그전에 이직률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진흥원도 하나에 직장이고 하나에 기관인데 안정화가 찾아가네요. 제가 일하는데 안정화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산하기관, 사회단체 123개를 관리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이직률이 많아 무슨 뭐 직원채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보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직률이 많아. 장기수 원장님 오셔가지고 이직률도 줄이고 안정화단계로 접어드는데 좋은 형상인거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이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인거 같아요 왜 그런말이 나왔는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똑같은 정규직으로 봐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 박철웅

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사무처라고 되어있는데 사무처라는 명칭이 궁금합니다. 실제에 사무처 정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 그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사 박철웅

진흥원 정원이 되야지 사무처라는 것이 실제에 있습니까?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예,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박철웅

조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직속기관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이사회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박철웅

그리고 이번에 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상당히 많은데 희망적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최종인원을 보면 상담복지센터 같은경우는 원래에서 4명이 늘어나고 활동진흥센터는 1명이 늘어나는데 이런 불균형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그 상담복지센터 4명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신설을 한 직원이구요 활동진흥센터는 저희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정원을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것을 전환하는 그래서 신규직원을 기준에 있는 어떤 조작 신설된 것에 대한 전환 진행될 사항입니다.

이사 박철웅

밖에서 볼 때는 청소년진흥원이라면 법상으로도 그렇고 청소년활동진흥법 복지진흥법 두 성격인데 사업 및 사업에 종사하는 정원에 숫자가 다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한쪽은 크게 늘고 한쪽은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은 크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활동진흥센터쪽에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이사님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우리 이제 이사님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같은 청소년 관련된 범지도자인데 좀 편하게 말씀 드리면은 상담은 지금 4년째 국가에서 3%인상을 해주고 있는데 활동에 경우는 같은 지도자인데 인상을 전혀 안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회의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활동에 다양한 영역들이 개발되고 해야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거구요.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정책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저희는 똑같이 여가부에 지침과는 상관없이 활동이든 상담이든 지도자라는 개념으로해서 일괄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 재정부담이 조금 부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영역이든 상담영역이든 여가부든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 임금을 동일하게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부서별로 상담쪽은 지금 4년째 3% 해주고 있는거고 활동은 동결인거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는 같은 지도자들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게 낫다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점점 심화될 경우 우리가 도가 출연금이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말씀하였듯이 그것을 배려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이사 김혜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이게 6번을 논의하고 있지만 9번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9번에서 여쭤 봐야되는건지 실제 및 정원규정이 사업계약직 정규

직전환계획하고 거의 동일한 사항인거 같아서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환비용이 아까 5500정도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이것은 정원을 몇 명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뒤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것 이구요. 동일 건으로 했어야 한건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사 김현옥

그런데 5500정도 전환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한번 올라가니까. 정규직이 되면 쭉 계속 되는 거라서 이정도 비용이 더 발생을 할 텐데 굳이 인건비를 높여주고 사실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는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늘어 난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보장이 쭉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사 장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삽감되고 증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평년정도에 상황들은 유지된다고 감안하고 있구요, 정규직을 전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노동에 보장된 비용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꿈드림센터 같은경우는 5명을 전환하는데 천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문화센터는 그동안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정정도 맞추려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저희가 5명이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정형이 늘어나고 이동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배치를 받게되면 종합 15명입니다. 그렇게되면은 우리 도가 책임져야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안정적인 꿈드림센터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거기는 우선 전환을 하고 성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처 이후에 전환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8800이 드는데 이미 2015년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법적수당은 동일하게 법인에서 포용하는 것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환하는

데 비용하는데 총 4000만원 정도에 비용이 듭니다. 전환을 안하더라도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외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조같은게 복잡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전환을 하구요, 2016년에는 예를 들면 동반자라던지 인터넷중독 관련된 분들 10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해서 인터넷은 12개월을 하라는 방침을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을하다가 2개월을 쉬게 되는거거든요. 동반자는 10개월이면 우리 아이들이 상담 받아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2개월을 쉬어야되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이 구조는 전반적인 예산속에서 개선할 것입니다. 그럼 1~2월에 애들 방학인데 더 많이 상담하고 찾아오고 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저희가 10개월 사업만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용에 안정과 사업에 안정을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후에 도가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절대수치에서 1%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최소한 3%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1%가 넘지 않기 때문에 3% 목표까지 갈때까지는 사업도 늘어나야되고 고용도 안정되고 해야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김혜원

원장님 굉장히 애를 쓰신거 같아요 그 취지는 제가 100% 동감 합니다. 지금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곧 만들어 질 거 같다고 말씀하셨서 그들과의 형평성을 논의하시고 이게 확정이 안되고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환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고민이 이제 고정형이 신설이 되면서 도가 성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나 진흥원에 산하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도가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대학이나 기관에 위탁을 주게되면 저희는 5명만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고정형도 저희가 맡게되면 5명이 직원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 챕이 5명이 전환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5천만원 정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도와 그것을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되면은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성문화센터 종합적인 관리를 하자, 대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해주는 예산을 주시겠다는 확답정도는 받아야만 저희가 부담이 덜 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 된 이후에 요것을 결정한다는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 사전에 충분히 팀장님이나 정책관님께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이마다보니까 굉장히 운영이 불안정하게 되요. 기관이 대학이라던지 몇 개 안정된 기관이 있지만은 서산이라던지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맙다 보니까 조직운영에 안정된 운영에 형태로 이걸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들을 자격을 갖춰서 채용한다던지 이런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올해 여성가족정책개발원에 협업을 해서 과제를 좀 했습니다. 어느 고정형이 어느곳이 적당한지 이 운영은 어떨 것인지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결정 되리라보고 그 결정에 맞춰서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저희가 부담을 책임질 수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려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가져보고 그것이 안정적이다 할 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수당들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몇가지 2~3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을 해주고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회하고 상의가 되야 그런 사항이 있고 인건비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끌고야 담아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사 김혜원

아까 박원장님이 질문해주신거 하고 제가 연결되어 생각이 있는 부분이에요.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생기면 이게 이제 활동이냐 상담이냐 왜 이쪽이 훨씬 더 많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냐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정형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생기면 이들은 같은 성문화센터 일을 하면서 정규직화 되지 못하면 그 속에서 편차가 많이 생기면 여기서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사 장기수(원장)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정 이후에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제 생각은 저는 이게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나눠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을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래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당장 짤라내는 것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해서 금방 짤라 내는것도 아닌데, 그게 정규직이라고 해도 사업이 없어진다면 직제가 없어지면 정규직도 의미가 없는거거든. 그 사업이? 그렇잖아요 도에서 직제가 없어지면은 그 공무원은 짤라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논하는게 아니라 그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 되었냐 안되었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하는데 제가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인건비 부분에서 확실히 챙겨가야된다는 리더에 방침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진흥원에서 잘 해주면 되는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직제 및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의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실제 및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 7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은 무엇있니까? 원장님?

이사 장기수(원장)

아동학대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추가합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범죄경력 사항만 추가한다?

이사 장기수(원장)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보통기간들을 수습기간을 6개월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과도하게 1년을 두고 있어서 작년부터는 6개월로 시행하고 있는데 하구요, 성문화센터가 결정 되서 우리가 전환이 될 경우 채용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가부에서 법적근거에 대해서 내부에 하겠다 내용하구요, 원장 상장신설은 저희가 지금 보통 상을 줄 때 우리가 청소년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상이나 도지사상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기관에서는 이왕에 상을 유연하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상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려면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야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결재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상을 주려면 포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포상위원회를 둬서 적격여부를 따지고 도에서도 포상을 하면 이 사람이 적격여부를 따지거든? 모든 공무원까지 포상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텐데?

이사 장기수(원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시군 행사 중에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상들에 요청이 있을 때 지금도 원장상이라고 해서 주기는 주는데 절차를 조금 간소화 하자는겁니다. 저희 직원들을 주겠다는건 아니고 시·군행사중에서 시·군 사업 중에서 간소화해서 줄 수 있으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상이 저기 권위가 있어야 되는건데.

이사 송태화

이렇게 하시죠. 규정에 원장님의 주는 것은 기관장이라 가능한데 규정을 보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는걸로 이렇게 하면 떳떳하고 좋을 거 같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이게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 결재를 받아서 공적이 과정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이사 장기수(원장)

그렇게 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절차 밟아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 넣는 걸로해서 수정·가결해주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안대로?

사회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저희 규정에 포상심사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은 다음 이사회 때 개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러면은 이것은 부결을 시키는걸로 할게요?

사회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아? 아닙니다.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아니 내가 왜그러냐면 이것은 일을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호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의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호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 8호 보수규정은 뭐니까?

이사 송태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 송태화입니다.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게 문제 보다는 의견을 제시 하는겁니다. 이 성과 연봉에 대해서 주는 건 찬성합니다. 다만. 성과연봉을 기본연봉에는 진흥원에 기본연봉이 기본봉급 플러스 수당으로 되어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성과급을 계산할 때에는 수당에 대해서는 플러스해서 주는 것 이지 이 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별개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연봉 산정할 때에는 기본봉급에다가 몇%를 준다 몇%를 준다를 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체계상 내년도 연봉이 몇%를 올랐다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수당을 플러스 해가지고 시군에 일을 나눠서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 착각을 하게 되면은 기본연봉이 아닌 전체 연봉액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서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려성 얘기는 안하려고 하는데 뒤에 지금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기본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기본연봉을 주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이 20~30만원 더 준다. 대부분 성과급을 할 때는 4등급으로 나눠서 120%, 100%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 돈이 없어서 봉급이 예를 들어서 200인데 120%면 240을 줘야되는데 못주고 20~30만원 준다고 하니까 이 보수 문제는 도가 성과급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때는 어느정도 지켜줘야 된다는거죠, 기본연봉에다가 10분에 10%를 연봉에 가산해서 주게되었다는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것을 내년도 5월달에 성과급을 계산해가지고 기본봉급액에 120%를 5월달에주고 연봉측정 할 때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있느냐면요 연봉을 3%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늘린다고 되어있거든요.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를 하는 것은 호봉이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봉에 적용을

10%를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타가는 사람들은 10%를 적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기하학적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받고 연봉은 내년 연봉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3% 또 더한다. 연봉에 체계가 조금 좀 묘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연봉을 조금 주는 것은 이해하거든요 그것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연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급에서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체계인데 여기다가 기본으로 3%를 더한다. 이것은 호봉제를 그런 데인데 연봉에 중복성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개정전에 기본 연봉액에 0.9%를 익년도 연봉에 산입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연봉인상 공무원 인상률을 감안해서 인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산하기관별로 성과급이 다 다르니까 월봉액에 100%를 하라는거고 월봉액 100%를 잡다보니까 기존에 기본연봉 0.9%를 잡을려다보니까 그게 10% 하면은 0.9% 안됩니다. 0.84%입니다. 저희들이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기존에 규정을 보면서 한 겁니다.

이사 송태화

지금 실장님하고 얘기의 본점은 뭐냐면 기본연봉을 줘서 성과급을 a,b,c,d로 나눠서 110%주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줘야되는데 그걸 못주는 것은 별개에 문제고요 이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3% 중복성을 얘기하는거에요. 못주는 것은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거죠그런데 그 성과급을 월봉액을 봉급액에 170%

를 주잖아요 s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고나서 그 다음에 연봉에다가 1/10을 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3%를 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중으로 연봉을 올린다는거죠 연봉계획 개념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다. 지금 일반적으로 진홍원이 제가 볼 때 느낀게 뭐냐면 연봉액을 하긴했는데 연봉제를 혼찮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 혁신담당관실에서 성과를 이렇게 이렇게해서 고친거에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뒤에보면은 9번째에 3%를 올린다 이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송태화이사님 무슨 말씀인가를 알겠는데. 우리가 봉급이 a라는 사람이 300만원이 정해졌어요

연봉이? 그렇다면은 내년도 연봉이 3%라고 한다면은 그중에 3만원이 올라가는거죠? 그렇죠? 30만원 올라가나요? 3%면은? 30만원이 올라가서? 그게 이제 그 사람에 연봉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성과급에 대해서 연봉을 더 하는 것은 연봉은 그것이고 성과급은 다시 성과급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서 a,d,b,d 4등급으로 나눌거 아니에요. 성과급이 우리가 예산 2천만원 사용된다던지 3천만원에 대해서 a,b,c,d 등급을 해가지고 주면은 a등급을 한 사람과 이걸 이제 다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연봉에다가 성과급을 보태서 그것을 저기 12월 달로 계산해주면 그 시스템을 도입 하는거거든? 그렇잖아요?

이사 송태화

그러니까 요기 요안은 그게 맞다는거죠. 저는 여기다가 저 뒤에 가면 기본연봉 3%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뒤에가면은 계약직에 대해서 기본연봉인상(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서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플러스 알파 3%를 또 같다 붙여서 중복성이 있다는거죠.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우리 이 진홍원은 그 봉급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과연봉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성과연봉을 빼놓은 예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a,b,c,d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작년도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라서 그 사람 연봉에다가 다시 이돈을 보태서 나눠서 주는식이 되는거죠?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송태화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성과급이 100%가 일정정도 보장되어있어서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그해 성과급이 그다음 연봉계산 할 때 플러스가 돼서 자연증가가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성과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성과급이 없었고 인금인상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구요. 그리고 2015년은 아예 저희가 성과급이 0.9%였기 때문에 이 인상을 못따라가기도 하고 성과급을 통해서 제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였기 때문에 인상을 좀 하려고 지금도 인지하고있는 바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과급을 안정적으로 100%를 해서 성과를해서 연봉에 반영이 된다 하면은 이 3%에 의미가 안하더라도 증감률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사 송태화

증감이 아니라 어쨌던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이백 몇 만원을 타야되는데 못탄다는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성과급제도가 도입된 이상 주는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후에 이것이 계속 간다고하면 복리 형식으로 막뛰는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단해야된다 못주는 것은 별개에 문제 라는거에요.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성과급주고 3%또 더하고 이거를 계속 몇 년만 한다하면은 연봉이 막올라가는거죠.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근데 저희들이 이사님 호봉제는 호봉이있고 물가인상률에 따라 공무원들이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님 말씀만 따라 우리 연봉을 할 때 공무원인금인상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를 더 해줘야됩니다.

이사 송태화

아니아니 잠깐만. 성과급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취지는 성과연봉이 아니고 일반 호봉제에 따라 예를 들어 자기 호봉이 올라간다 플러스 자기 인상분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성과 연봉제를 한단 말이에요 성과에 의한 연봉제 그래서 차등 지급됨이 성과 연봉제고 그러니까 지금 적용을 해오고 있다는 것에 별도에 인상률은 이중성이 강하다는거죠. 아니 지금 돈을 못 받는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3%를 준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성과급을 줬을 때에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적으로 성과급을 안정적으로 줄때에는 이 자연인상분이 일몰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신거죠?

이사 송태화

당연하죠.

이사 장기수(원장)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성과급을 못하기 때문에 인금인상률에 대해서 일정정도 정확히 한계를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사 송태화

그래서 이부분이 금년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성과급을 혁신 담당관실이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모든 성과급을 기관장 얼마 뭐 얼마 해서 다 정해주고 지침대로 정해줘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연봉제 도입시키고 도청도 5급이상이면 다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자연분을 갖다가 이중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된 논리를 갖기 때문에.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봉액 100% 이려니까 이사님이 금액이 엄청크다 싶지 않은데 기준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구요 지금 저희가 일정적으로 과도기적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는거거든요. 송태화이사님 말씀은 정상적으로 성과급100%라던지 확보가 됐을 경우에 그걸 중심으로 임금체크를 일원화 하라는 것이고 지금은 2가지 체계가 혼재해있다는것이잖아요. 그걸 지적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혁신담당하고 계속 심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던게 뭐냐면은 성과급을 우리보러 알아서 하라기 때문에 우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거든요. 그럼 도에서 주지 않으면 저희는 성과급 없는 제도기 때문에 다만 올해까지는 요렇게 말씀드려서 성과급 확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40~50분 이렇게 저한테 막 말씀하셔서 못했는데 올해까지는 요렇게 하구 내년부터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과급을 확보해서 그것을 연봉인상에 대한 안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건 30%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중이니까 올해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100% 확보를 해서 성과급에서 자연인상분이 반영되도록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이사 송태화

감사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과급을 다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직원들에 봉급을 3%안올리면 너무 직원들에 부담이 된다하면은 원장님의 어떻게 책임지던 간에 내년에 이 3%에 대한 규정을 의결을 한다. 몇 년도까지 3%를 시행한다 하시고 조건을 가시고 확답하신다 하면은 이걸 통과시켜야 좋죠.

이사 장기수(원장)

최소한 100% 될 때까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은 산하기관은 150%~200%인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0.9%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성과급이 신설된거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신설을 하는데 신설하는 최하수준이

예를 들자면 혁신담당관에서 100%정도는 무조건 해야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80%를 올렸는데 그것도 하도 문제제기해서 본예산에는 30%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성과연봉제는 공무원들에 그런 비례분석 하는 성과연봉제 규정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사회 이재기 행정지원실장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송태화이사님이 성과100% 연봉에 몇백만원씩 가진다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200만원짜리 월급 직원이 성과급을 100% 받더라도 익년도 연봉 20만원밖에 안됩니다. 성과급에 1/10을 연봉에 넣기 때문에 월봉액에 넣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 송태화

지금 근본적으로 내가 1/10하고 1/15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성과급을 받았으면 거기에다가 연봉제를 적용을 한단말이죠 이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본적인거에요.

이사 장기수(원장)

하나에 임금체계로 가라는 말씀이시죠?

이사 송태화

예.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개정안 49페이지를 보면은 성과연봉에 1/10을 익년도 기본연봉에 포함한다. 송태화이사님이 말하는게 우리가 기본연봉올라가는 것하고 성과연봉은 또 틀린거에요.

이사 장기수(원장)

아닙니다. 정책관님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성과연봉을 일정정도 100% 확보한 것을 성과에 차등지급을 평가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봉 계산할 때 그것이 증가가 하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르다 보면 하나의 체계를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과에 대한 연봉을 전혀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3%에 대한 인상을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국가에서 인상하라고 주기 때문에 혼재되어있습니다, 임금구조가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다만 직원들한테 불리한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합리적이고 이익이되는 방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 첫 번째 이사회든 두 번째 이사회 때 종합적인 안을 내겠습니다.

이사 송태화

그러세요. 지금 위원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연봉을 계산하게 되면은 연봉에 등급이 175 125 이런 등급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타는건 별도로 타고 그리고 내년도 연봉에 올릴때에는 그거를 반영한 반영한 비율이 따로있어요 그게 연봉제에 기본적인 취지고 그게 지침이 의해서 갑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일원화 해야되는데 자연인상분을 따로받고 이걸 이렇게 혼재 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그래서 이사님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구요, 그래서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서 1,2년 이기 때문에 어쨌건 내년까지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송태화

일단은 가고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러니까 공무원하는데로 준용을 하라는 얘긴가 무슨말인가 알아들었죠? 그렇게 가는걸로 개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다른 것은 뭐 없습니까? 저기 위원님들 다른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송태화 이사님 뭐 다른 것 없습니까?

이사 박철웅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끝에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여기도 성과급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진홍원 생기고 원장님 연봉이 너무 낮아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누가 오고싶어 하겠나, 훌륭하신 분이 오겠나, 작년에 조금 올라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오르지 않고 늘 하한선에 센터장님에 월급이 궁금합니다. 왜 한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3% 인상할때도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이분들이 일을 잘 못하시나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저는 활동쪽이니까 우리 박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중앙에, 모든 지방행사 쭇아 다니면서 활동하시고 진홍원에 브랜드를 찾고 계신데 뭐가 부족해서 인상이 안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제가 설명 드리면요, 작년에 급여를 얘기해서 최종하지만요 작년에 저희가 연봉인상에 상관없이 3800에서 4500으로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실·센터장님만 작년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니까 기존에 운영시스템이 원장에 월급을 일정정도 정해 놓고 나머지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클래스를 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연봉인상관련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도 센터장님이 우리 산하기관은 아니지만은 시에 센터장님이나 시에 팀장님 보다 80% 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심지어 그러면 좋은 인재가 오지 않겠다. 최소한 비슷하던지 라도 해야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이사 박철웅

우리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이사 주도연

예 예.

이사 박철웅

그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과 여성가족부와 자유학기재하고 연계를 하면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재 성공을 위해서 자유학기재 기본이 체험활동이지 않습니까?

이사 주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사 박철웅

체험활동에 센터인 활동진흥원하고 청소년진흥원하고 어떤 연계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 주도연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구요, 자유학기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2년 동안에 한 학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진로 관련 되가지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펼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교육청 및 각 시군교육청에서 다양한 체험관련 기관과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와 유관단체와 효율적으로 협동을 계획하고 있고 사실은 내년에 전면 시행인데요 올해도 프로가 이미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도 있고 앞으로 실행 될 텐데, 그런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진흥원과도 더 좋은 관계로서 아이들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 박철웅

지금쯤에는 도교육청하고 이 진홍원하고 협업에 불과 사업에 포함이 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보여서 걱정이 참 많이 되거든요? 참여적 체험활동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교육청이 자기네 특권만 가지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여기 진홍원과 긴밀한 경쟁을 하고 활용을 하세요 여기가 가진 네트워크가 경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하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윤영우 이사님이 마지막 주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한게 그리고 진홍원이 자리잡고 키가는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정책관님 오셔서 참 예산이 도에 있는 조직이 2억정도 늘어난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큰일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한꺼번에 제가 상정을 하고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9호 사업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획(안)과 기본재산(출연금) 이자 사용 계획(안)과 2016년 급여 인상 지급(안)에 대한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 송태화

64페이지 계약직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환이 파트별로 되어있거든요 어디는 백프로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래서 약간 희망리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생각하면서 어디는 5명이면 5명 다해주고 어디는 또 안한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상의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현행 신분을 유지한다. 이것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적격한 사람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 번에 일괄전환에 계획에서 그 별도에 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세 번을 떨어져가지고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 신분유지가 아니라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서 가는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위원님들 이것은 신분과 관계 되는거라 문제없는 사람을 퇴출을 시키는 게 어떤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원장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이사 송태화

이 방법상 여기서 넣고 예를 들어서 세 번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안되면 누고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은 계약직과 일반직에 차이를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정규직됨으로서 보장을 받는 문제하고 계약직을 발언 할 수도 있거든요. 정규직화를 시켜주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시험을 안보면 되죠. 근데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별도에 인사위원을 면접위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을 봤는데 세 번을 다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남아서 그 일을 지원을 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자 그렇다면은 재명을 시키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던간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세 번을 면접을 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사 박세화

그게 뭐냐면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2년 까지 추가 하게되면 고용의무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 6개월에 한번 씩 하게 되면 일년 반동안 정규직 전환이 안된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재계약여부 일반적으로 고용의무가 생기는 게 6개월이니까요 한 3번정도 해서 이분이 정규직전환 적격자로 판단이 안되면 2년 초과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아니. 정규직을 안하고 계약직으로 남겠다면 계약직으로 가는거지요.

이사 박세화

근데 그게 현재 현행법상 계약직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사 장기수(원장)

지금 대상이 다 2년이 넘어있습니다.

이사 송태화

지금 2년이 넘어서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있다 이거죠?

아니 그렇다면 해고가 불가능한건 알겠는데 그럼 세 번 면접을 봐서 떨어진 사람은 뭔 능력 때문에 이걸 갖고 가야되는지 이건 법적으로 싸워봐야 상정을 생각을 하는거죠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왜 계약직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검토를 했을 때 법적으로 안된다라고 하셔서.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아니 지금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잘라 낼 순 없잖아.

이사 송태화

아니 해고사유는요 기관장이 평가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예를들어 일에 대한 능력평가를 몇 번 예를들어 한번 떨어지고 두 번떨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그럼 그 조항을 넣자 이거입니까?

이사 박세화

지금 노사정에 최고 쟁점이 되고 있는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나. 큰 기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해서 이제 내보내고 또 새로 이렇게 채용해서 평가해보고 맘에 안들면 평가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자 그게 이사님 의도시구요.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객관적인 평가 예를 들어 종합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한 수차례를 평가해서 예를 들어 뭐 전환을 할때도 그걸 일종에 일반적인 주제로 평가하고 인사규정갔을 때 예를 들어 이평가가 이렇게 평가점수가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안나왔을 때 이렇게 안나왔는데 개선에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 될 때 해고 할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해고해도 정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이사님 말씀 동의는 하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지금에 있는 현직원들은 대부분 그런 자격기준에 맞게 정규직 기준에 맞게 뽑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3번이라고 하면 2년정도에 기회를 줬는데도 이게 저희 내부에 받침 정도를 우리 이사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규칙을 정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3번에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애초에 있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법적 근거를 한번 제가 더 정확하게 받아서 법적사회에서 의결되는게 아니고 그런 저희 원에 있다하면은 그런 방안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우리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사 이종원

이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급이나, 그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회의가 끝나면은 내부운영 문제거든요 그것을 의뢰를 해서 그것이 권한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행을 하고 법적으로 쟁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다 별도로 충분히 사후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근데 나는 그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데 이게 진홍원장이라는 원장이라는 이 직책을 갖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우려는 범할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거요.

우린 뭐 내가 떠나고 지금 우리 장원장님 떠나고 나고 한 이삼백있다가 또 그런 사람이 혹시 자기 일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마음에 안든다는거죠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능력평가하게 되있잖아. 일방적으로 고용에 유연성만 준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까봐.

이사 송태화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는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계약직을 일반적으로 바꿔주는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에 몇 사람이 인사위원회가 와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 인식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반에서 싸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각심을 크게 갖지 않는한 이 조직이 남이 볼 때 굉장히 우수운 조직으로 보인다 이거죠. 또 세 번을 외부사람이 몇 명이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평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짜고치는 고스트이라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인사발령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가 관련사항이에요. 원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라도 가야 전환은 일반적이게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해야되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안 하는겁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우리 노무사님 문구를 넣어도 관계를 상관 없습니까?

이사 박세화

변경절차를 받아서 넣으면 당장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 시간을 두고요.

이사 장기수(원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식 제안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예 뭐 다른 사항있습니까?

이사 송태화

여기 규정 배분하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가시는거에요?

이사 장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사업별로 인건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생기고 법률에 따르면은 점진적으로 한다 하지만 예산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좀 하고 구조적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장순경이사님 오늘 오셨는데 그래도 한말씀은 하셔야지요

이사 장순경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특별히 할 말은 없구요.

지금 이제 해주신 보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는 상황인거 같구요,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을 인지 해야되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우리 경찰청은 할 얘기 없어요?

이사 김현옥

네.

이사 윤영우

자 이제 그러면은 이 3건에 대해서 쭉 보셨죠? 한건하건에 대해서 좀 신도 있게 하려고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가지고, 우리 저기 오신분 우리 김상국이사님한 말씀도 안하시고 한 말씀하셔야 될거같은데 오늘 오셨으면 그래도 한 말씀은 하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세요.

이사 김상국

잘 지켜봤구요, 예산은 별로 없는거 같긴 하네요. 청소년이 미래인데 예산이 다른 기관 보다 적다고 얘기하시고 하니까 많이 주세요.

이사 일동

웃음.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예산이 적은건 아니구요.. 이게 우리 원장 오셔가지고 하도 땜를 써가지고 올라

간거에요. 사실은 사회단체에 비하면은 내가 내면을 다 맞출라고 했어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 센터, 센터장은 센터장에 그룹에 맞는 봉급체계를 만들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안만드네 특히 청소년 파트에서 안만들어. 왜냐 불만이 많아. 건강가족센터나 이 예전 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어 그렇잖아? 우리 원장님 때문에 이 얘기 하는거고 이게 내가 복무기간에 상대성이야 내가 변호사보다도 훨씬 적게 받는데 일은 훨씬 많이 하는 거 같아 내가 우리 저기 검사가 있는데 그친구는 판건비도 훨씬 많이 주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생각이 들어 내가 가보면은 고등학교가 후배가 천안 청장하다가왔어 시청장 시청장 하다가 와가지고 어이 내가 우리 김청장님 점심 얹어 먹으러왔다고, 굉장히 봉급도 많이주고 업무추진비도 많고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거에요 내가 일은 훨씬 많이 하고 내 행사 쫓아다니고 내가 저녁까지 쫓아다니는데 봉급을보면 내가 3배를 더 많이 받아야 되 내가 인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각자 주어진 환경속에 얼마나 봉급을 많이 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야.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자 뭐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거 같아요. 3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9안 사업계약직 정규직 전환계획(안)과 기본재산(출연금) 이자 사용 계획(안)과 2016년 급여 인상 지급(안)에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사 일동

예. 없습니다.

이사 윤영우(송석두이사장 대행)

의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